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관련 금융기관 추가와 지원대상 요건 완화로 지원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등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 나. 금융기관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추가(안 제2조제3호)
- 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요건 완화(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1) 대표자 주소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7. 7(목) ~ 7. 27(수) / 20일간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미래지역활력과-2750(2022.5.31.)]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25010(2022.6.2.)]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성주군”을 “성주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으로, “저축은행과”를 “저축은행,”으로, “지역 금고”를 “지역금고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으로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소 및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을 “제4조에 따른 특별보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은 연3퍼센트”를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u>성주군</u>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u>소상공인</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u>저축은행</u>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u>지역</u> 금고를 포함한다.</p> <p>4. ~ 6. (생략)</p> <p>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p>	<p>제1조(목적) ----- <u>성주군</u> ----- ----- -----.</p> <p>제2조(정의) ----- -----.</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u>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농업협동조합법</u>」·「<u>수산업협동조합법</u>」·「<u>신용협동조합법</u>」----- --- <u>저축은행</u>, ----- ----- <u>지역</u>금고와 「<u>산림조합법</u>」에 따른 <u>산림조합</u>을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p>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은 연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 ④ (생략)

① ----- 사업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① -----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

-----.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

-----.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최정민